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 안 번 호	회의차수	회의 일 자	제	의	자
제 25 호	제 12 차	1990. 5. 17	총	재	김 건

의 안 <u>"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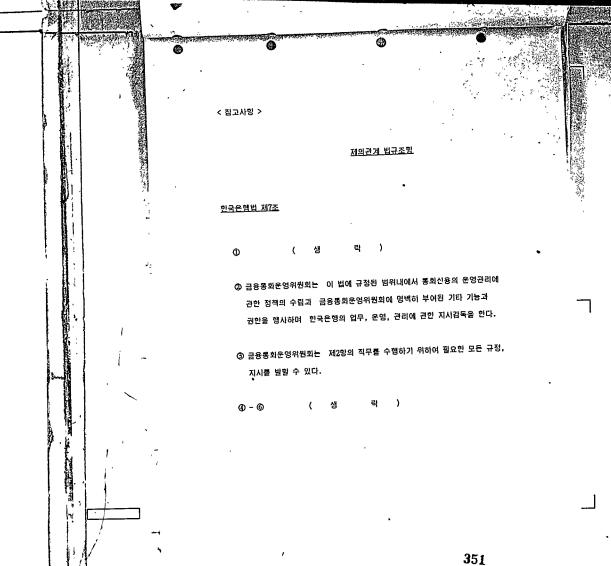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1990년 5월 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대적」에 적극 부용하여 부동산루기름 근절함으로써 경제안정 기조롭 다지는 동시에 한정된 금융자금이 생산부문에 우선 공급되도록 투기 또는 과소비의 소지가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제한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36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	5 5	개 정 (안)	비고
i₁1조 [~] 제3조 (생 략)		도 ~ 제3조 (현행과 길음)	3
네3조의 2 (담보취득의 제한) 금융기관은 여		S의 2 (담보취득의 제한) <u>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C</u>	다음 <u>각 호의</u> -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 범위 확대
1/2이상이 <별표> 제3호의 여신금	i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건물 및 당해대지를 담보로 취득하	h여서는 아니된다.	<u>다만, 한국은행 충재가 중소기업지원 등 불기</u>	Pilitra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면적의 1/2이상이 <별표> 제3호의 여신	금지업중에 أ- 예와인정사항의 결정을 충재에게 위임
	!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 대지	
	l l	2. 연면적의 1/2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	및 당해
	Ì	대지(주택 및 당해 대지 제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동 「규칙」을 준용하여	여 판정된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비업무용부동신	<u> </u>
		4. 「토지초과 이득세법」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유휴토지 등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	
		6. 제3자명의 부동산	
제4조 ~ 제12도 (생 략)		조 ~ 제12조 (현랭과 같음)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6. 1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명시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기관이 취득하	고 있는 - 기취록한 담보취목제한대상 부동산담보여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담보에 대하며는 종전 규정	을 계속 - 대한 경과 11준 마련
	-	적용한다.	<u> </u>